##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희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617

발의연월일: 2024. 9. 4.

발 의 자: 박희승·김준혁·한정애

이훈기 • 이건태 • 서영교

어기구 · 김원이 · 강유정

이개호 · 정진욱 · 위성락

조계원 • 전진숙 • 정준호

임광현 의원(16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명시하고 있음.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은 그 사용 목적에 필요 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.

또한 금융회사등은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, 사용 목적,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, 증거 인멸, 증인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할 경우 등에는 최장 1년 간 통보를 유예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이러한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은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침해

할 우려가 있으나, 현행 서면 통보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쳐 명의인 은 압수수색 사유나 경위 등을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 만큼 개선의 필 요성이 있음.

이에 금융기관등은 수사기관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제공된 정보의 기간, 제출명령 또는 영장 발부 사유, 통보유예 사유 등을 명 의인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하여 사후적 조치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(안 제4조의2제1항).

#### 법률 제 호

##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의2제1항 중 "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, 사용 목적,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"을 "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사실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, 사용 목적 및 제공 대상 거래기 간
- 2.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
- 3.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 그 주요이유
- 4.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 유예 기간 및 사유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2(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	제4조의2(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
의 통보) ① 금융회사등은 명	의 통보) ①
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	
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	
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(조세	
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	
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	
제외한다)ㆍ제3호 및 제8호에	
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	
우에는 제공한 날(제2항 또는	
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	
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	
날)부터 10일 이내에 <u>제공한</u>	<u>다음 각 호의</u>
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, 사용	사항을 포함한 거래정보등의
목적,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	제공 사실
<u>등</u> 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	
보하여야 한다.	
<u>&lt;신 설&gt;</u>	1.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
	내용, 사용 목적 및 제공 대
	<u>상 거래 기간</u>
<u>&lt;신 설&gt;</u>	2.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은 자
	및 제공일
<u>&lt;신 설&gt;</u>	3.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

	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
	<u>그 주요 이유</u>
<u>&lt;신 설&gt;</u>	4.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
	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 유예
	<u>기간 및 사유</u>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